

이슈페이퍼 2018-09

##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급 현황과 개선 방안

---

이정림

1. 문제의 제기와 현안
2. 장애 유아 보육 현황 및 특수교사 배치 현황
3. 유아특수교사/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 
및 수급 현황
4.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 개선 방안
5. 어린이집 인적환경 개선 방안
6. 기대 효과

참고문헌



#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급 현황과 개선 방안\*

이정림 연구위원

## | 요약 |

-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는 장애아전문, 장애아통합, 일반 어린이집에 각각 6,158명, 4,079명, 1,635명으로 총 11,872명이며, 이는 교육부 관할의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총 5,186명에 비해 2배 이상임.
- 그러나 11,872명의 장애 아동 중에는 0~2세 장애 영아, 초등학교 입학유예 아동과 방과 후 과정 아동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3~5세 장애 유아 수는 더 적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됨.
-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반 담당교사 중 대략 10%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('17. 6월 기준, 보건복지부 내부자료),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직무교육 이수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.
- 단기적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, 컨설팅, 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 제공이 되어야 함.
-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.

## 1 문제의 제기와 현안

### 가. 문제의 제기

- 2007년에 제정된 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서는 만 3~5세 장애 유아를 의무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  - 이는 장애 유아의 교육 수혜율을 높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음.

\* 본 원고는 「이정림·이윤진·박현옥(2017).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. 육아정책연구소」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.

- 한편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장애 유아의 50%가 넘는 대상자가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'간주' 되고 있음(교육부, 2017a).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9조에서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.
- 2012년도에 제정된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에서는 장애전문 및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였음.
  - 즉,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장애영유아 3명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하고,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아특수교사여야 함.
  - 이러한 배치 규정은 2016년에는 만 5세 이상, 2017년도에는 만 4세, 2018년도에는 만 3세 까지로 명시하고 있어, 현재 6명 이상의 장애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는 유아특수교사가 1명 이상은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임.
- 이상의 법 규정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등으로 유아특수교사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 -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유아특수교사는 교육부 소속의 특수학교 유아반, 유치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에 비해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는 많은 반면, 급여는 낮은 편임.
  -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유아 배치를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해, 어린이집은 장애유형과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배치되고 있고 보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임.
  -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를 수급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.

## 나.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

-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장애영유아 학부모단체, 현장, 관련전문가 들은 다소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임.

□ 원론적 입장

- 장애 유아에 관한 의무교육 관련 법적 규정은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근거하고 있고, 이러한 법적 근거는 교육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장애유아와 관련된 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임.
  - 동법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교육 간주기관으로 보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받고 있는 장애 유아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원래 법적 근거는 교육부에 있다고 봄.
  - 이러한 맥락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장애 유아와 동일한 의무교육 대상자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봄.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에 규정되어 있는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,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 21조 제 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함.
  - 유치원에서 장애 유아를 유아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 유아의 질적인 보육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사 관련하여 제정된 법적 기준을 양보 없이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
  - 유아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.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거하여 모든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부가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
-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함.
- 동법에서는 3-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의무교육 간주 기관으로 인정받은 어린이집에 장애 유아가 배치될 수 있으나 관련 책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
- 모든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국가는 동일한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동등한 질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논거
- 장애영유아 학부모단체와 일부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

#### □ 현실적 입장

-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장애 유아를 교육하는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,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입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입장
- 교육부 발령 유아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를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은 다소 요원한 상황이므로 어린이집 관장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입장
- 유아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를 대체하자는 방안을 제안함.
-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을 강조
- 현장에서의 요구도가 가장 많은 제안으로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시행을 연기하거나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요구함.

#### □ 절충적 입장

- 원론적 입장을 양보하기에는 장애 유아 보육의 질적 저하 우려 및 상향화된 법적 규정이 후퇴하는 상황이 됨으로 법적 규정은 그대로 두되, 현실적으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잠정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법적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준비 작업을 하자는 입장
-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, 현실적으로 유아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하자는 중도적인 입장
- 한시적 연기 기간 동안 유아특수교사 수급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방안을 제안함.
- 일부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입장

- 이상과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한 간극은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둘러싼 현안 해결을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.

## 2 장애 유아 보육 현황 및 특수교사 배치 현황

### 가. 어린이집의 장애 유아 배치 현황

-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 현황은 <표 1>에 제시된 바와 같음.
  - 2017년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, 장애아통합어린이집, 일반 어린이집에 각각 6,161명, 4,066명, 1,462명의 유아가 배치되어 총 11,689명의 장애 유아가 배치되어 있음.
  - 이는 2017년 기준 교육부 관할의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총 5,437명 유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임.
  - 그러나 11,689명의 장애 아동 중에는 0~2세 장애 영아, 초등학교 입학유예 아동과 방과 후 과정 아동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3~5세 장애 유아 수는 더 적은 수치일 것임.
  - 현재 연령별 어린이집 배치 장애 유아 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통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.

<표 1> 어린이집 설립 주체 및 운영 형태에 따른 장애 유아 배치 현황

단위: 기관 수(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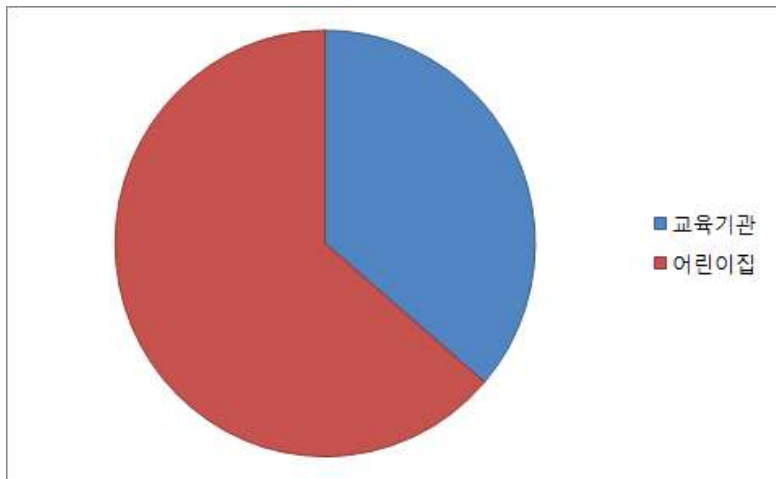
구분	국·공립	사회복지법인	법인단체	민간	가정	협동	직장	계
장애아전문 어린이집	43 (1,292)	104 (3,923)	6 (204)	24 (724)	1 (18)	0 (0)	0 (0)	178 (6,161)
장애아통합 어린이집	709 (3,007)	37 (166)	34 (194)	143 (653)	14 (22)	2 (4)	7 (20)	946 (4,066)
일반 어린이집	80	71	37	761	228	7	35	1,219 (1,462)
소계	832	212	77	928	243	9	42	2,343 (11,689)

주: 장애 유아 수는 장애 영아 및 초등학교 입학 유예 아동 등이 포함된 수치임.

자료: 보건복지부(2017a), 보육통계(2017. 12. 31일 기준)

-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, 유치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유치부 등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임.

-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유아는 전체 장애 유아 중에서 매우 적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  - 보육통계를 근거로 등록된 장애영유아는 73,470명이며, 이 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육 받고 있는 장애영유아는 11,872명으로 전체 장애영유아의 16.2%에 불과함 (박현옥·김주영·이계윤, 2017).



주: 특수교육연차보고서의 특수교육 통계와 보육통계를 토대로 구성하였음.  
 자료: 1) 교육부(2017a). 특수교육연차보고서.  
 2) 보건복지부(2017a), 보육통계. 보건복지부.

[그림 1]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 유아 수

### 나. 어린이집에서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현황

-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현황은 <표 2>와 같음.
  -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반 담당교사 중 대략 10%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(보건복지부, 2017b).
  -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직무교육 이수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.
- 현재 보육통계 상의 특수교사 및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를 통해서는 「장애아동복지지



원법」에서 규정하는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제대로 갖춘 교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.

- 장애 유아 현원 파악을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선결과제임.

〈표 2〉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아 보육교사 현황

단위: 명

어린이집 유형	장애아 수	특수교사	장애아 보육교사
장애아전문어린이집	6,161	1,269	835
장애아통합어린이집	4,066	833	558
계	10,227	2,102	1,393

주: 〈표 2〉의 특수교사 수치는 유아특수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정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가 포함된 수치임.  
 자료: 보건복지부(2017a), 보육통계, p.145, 148.

### 3 유아특수교사/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 현황

#### 가.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원 배치 및 교사 자격

-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원 배치에 관련한 법규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과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」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.
  -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서는 장애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.
 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에서는 장애 아동이 배치된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,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고 하였음.
  - 이와 더불어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서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자격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명시하였음.

-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춘 교사, 즉 교육부에서 발령하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와 보건복지부에서 발령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진 두 영역의 전문가가 같은 기관에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.
  - 이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에 근거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‘어린이집’이 ‘의무교육 간주 기관’이므로 보육교사만으로 운영되는 비장애 유아의 상황과 다름.
  - 따라서 의무교육 간주 기관인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,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함.

## 나. 유아특수교사 양성 현황

- 유아특수교사 양성 현황
  - 2017년 10월 현재 교원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총 11개 대학에서 매년 250명 내외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음.
  - 교육대학원에서도 약간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, 총 14개 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설치하고 있으나 입학정원이나 자격증 취득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명시된 자료가 없음.
- 유아특수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
  -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(교육부, 2017b)에 따르면 특수학교(유치원) 정교사(2급)는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.
  - 즉, 교직과목 22학점 이상, 전공과목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, 현장관찰 및 실습 관련 전공과목을 3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.
- 현재 기준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우 교육대학원이나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다고 할지라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실정임.
  -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, 일부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

을 전공할 시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반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로가 차단되어 있음.

## 다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현황

### 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현황

-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개 전문대학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매해 총 120여 명을 양성하고 있음.

### 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

- ‘장애아동복지법’이 제정된 2011년 이후 대학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는 전국에서 2개 대학으로 3년제인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와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가 있음.
- 예를 들면,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의 협조를 통하여 확보한 내부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음.
  - 첫째, 전공교과는 크게 보육자격 교과목과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교과목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음,
  - 보육교사 자격 관련 교과목은 교사 인성영역인 보육교사론, 아동권리와 복지 등 총 19과목(57학점)으로 편성하고 있음.
  -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관련 교과목은 특수교육학개론 등 총 12과목(36학점)으로 편성하여 보육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함.
- 이상에서 소개하였던 두 개 학교 이외는 4년제 대학으로 현재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에서 유아교육 전공 교수 3명과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수 2명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음.
  - 한국성서대학교에서는 장애교과목 8과목(24학점)이 보육교사 과정과 함께 운영되고 있음.
  - 일반보육에 대한 이수과목이 많아서 일반보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 통합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적용 및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.

- 반면, 장애교과목이 24학점으로 유아특수교육학과에서 이수하고 있는 80학점에 크게 못 미치는 학점으로 특수교육 관련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.
- 한편, 이상에서 언급되었던 학교 외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양성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공 전임 교수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으로 주로 외래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<sup>1)</sup>.
- 또한 장애아보육실습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,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 8과목에 대한 교과목 개요도 부재한 상황임.
- 현재 보육교사 자격 검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8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명으로도 교과목 이수를 인정받는 상황임.
-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를 질 높은 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목이 포함되어 교원 양성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즉, 비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과목, 실습과목, 특수교육 관련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함.

## 라.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 현황

- 이상에서 언급되었듯이 유아특수교사 양성 자체가 많이 되지 않고 있으며, 수도권 지역 대학에서는 유아특수교사 양성학과가 부재한 상황으로 천안이남 지역에서만 양성되고 있음.
- 반면, 유아특수교사 수요는 수도권에 더 많은 상황이므로 지역에서 양성된 유아특수교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임.
- 배출된 유아특수교사들은 특수학교, 특수학급,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지원 및 취업하고 있음.
-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도 2개 전문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특수교사 대체 역할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.

1) 2017년 11월 1주에 실시된 2명의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서면자문 내용을 토대로 함.

- 현장경험이 많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교육(특수교육)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여도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이 어려움.
- 현재 대학 평가 시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취업을 할 경우 임용율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.
- 2017년 12월 4일자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‘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(특수학급 1,250학급) 신설 및 특수교사 확충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특수교사 배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.
-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수교사 배치를 어렵게 함.

## 4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 개선 방안

### 가. 중단기 방안

- 단기적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, 유아특수교사 수당 지급, 교육부와의 협조 협의 방안 등에 관하여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음.
- 첫째,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, 컨설팅, 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 지원이 되어야 함.
  - 교사 교육 내용, 방법(온라인/집체 등), 횟수, 장소, 강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져야 하고, 어떤 전달체계(예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를 활용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수립 및 전달이 이루어져야함.
  - 이에 따른 사업 운영비 확보가 필요함.
- 둘째,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단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차별화된 수당 지급 방안 마련을 제안함.
- 셋째,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함.
  - 현장 경력이 많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교육(특수교육)대학원에 진학하여

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함.

- 대학평가에서 어린이집에 취업할 시에도 임용률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수용하는 것에 협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.

## 나. 장기 방안

-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.
  - 첫째, 특수교육과가 있는 사범대학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하거나 특수교육과 또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유아특수교육을 복수전공 하도록 하고, 이를 실현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실시함.
  - 둘째, 장기적으로 유아특수교사를 유인하고 배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조건과 근무여건(근무시간 조정 등)으로 진척시켜 나가야 함.
  - 셋째, 유아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도 갖추어서 장기적으로는 한 명의 장애 유아 당 한명의 교사가 돌보는 맞춤형 형태의 지원으로 나아가야 함.

## 5 어린이집 인적환경 개선 방안

### 가. 중단기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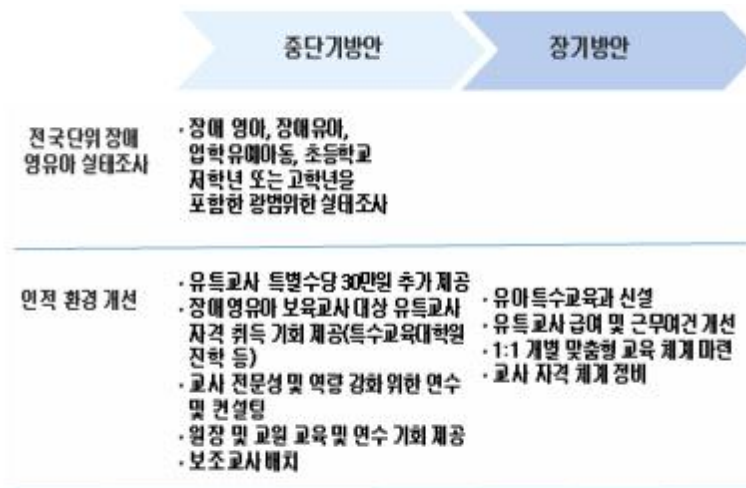
- 중단기적으로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지원되고 제공되어야 함.
- 첫째,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함.
  -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장애 담당 보육교사들의 면담 결과,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,
  - 장애 담당 보육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고,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교사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이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교사 연수나 컨설팅 사업이 강화됨으로써 장애 유아를 위한 질 높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임.
- 둘째, 원장 및 장애아 통합반의 일반교사 교육 및 연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.
  - 장애 유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장과 장애아 통합반의 일반교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함.
  - 원장과 장애아 통합반의 일반교사들의 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고 이들과의 협조와 연계를 이루기는 용이하지 않음.
  - 집체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.
- 셋째, 보조교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.
  - 어린이집의 장애 유아 배치는 장애정도와 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명의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유아를 동시에 돌보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음.
  -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보조교사 지원임.
  - 또한 교사 연수와 휴가와 같은 교사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보조교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.
- 특수교사 수급을 포함한 효과적인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장애영유아 실태조사가 필요함.
  - 장애 영아, 장애 유아, 초등학교 입학 유예 장애 아동, 방과 후 과정 장애 아동 등에 관한 현황 및 교사 배치 현황,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정확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.
  -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배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유아특수교사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가능함.
  - 관련 전문가 집단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질문 제작 및 조사 진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,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여 진행할 수 있는 국가정책 연구기관이 필요함.

- 현재 장애영유아 현황 파악, 교사 현황(유아특수교사, 특수교사 인정교사,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) 파악, 장애영유아 지원체계인 인적환경, 물리적 환경, 프로그램 및 치료 연계 등과 관련된 정보 부재임
-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영유아 대상 전국적인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.

## 나. 장기 방안

- 장애 유아 담당 교사 외에 원장과 장애아 통합반의 일반교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주기적으로 제공되고,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 및 대체인력이나 보조인력 지원이 원활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함.
- 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경우,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두 개의 다른 자격에 대한 기능과 역할, 급여 등에 관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.
- 궁극적으로는 장애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관한 자격 체계가 일원화되어 각 자격에 대한 기능과 역할 등이 정리되고 체계화 되어야 함.



[그림 2]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 개선 방안



## 6 기대 효과

- 어린이집에서의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 현황 파악 등을 통한 유아특수교사 수급 방안 모색 및 해결책 마련
- 전국 단위의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실시로 장애영유아 현황, 교사 현황, 장애영유아 지원체계인 인적환경, 물리적 환경, 프로그램 및 치료 연계 등과 같은 관련 정보 파악을 통한 적절한 정책 방안 마련 기반 조성
-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가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 파악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에 대한 서비스 격차 요인 파악 및 이에 관한 해결 방안 마련

## | 참고문헌 |

교육부(2017a). 특수교육연차보고서.

교육부(2017b).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.

교육부(2017c). '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('18~'22) 계획' 발표(2017. 12. 4.). 보도자료.

보건복지부(2017a). 보육통계. 보건복지부.

보건복지부(2017b).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보유 현황(2017년 6월 기준). 내부자료.

박현옥·김주영·이계운(2017). 장애아보육강화연구 -3~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체계를 중심으로-.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·전국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연합회.

### [법령]
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[법률 제15234호]
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[대통령령 제28211호]
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[법률 제14332호]
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」 [대통령령 제27960호]